

울산지방법원 2023. 7. 5 선고 2021가단113385 판결 [공사대금 반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화

담당변호사 김순득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재

변 론 종 결 2023. 5. 24.

판 결 선 고 2023. 7. 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20. 8. 1. 피고와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 및 도시계획도로 D 개설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를 계약금액 2,630,000,000원(부가세 별도)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46.82%에 달하는 공정율을 달성하였으나,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원고를 배제 시킨 후 지금까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,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 기성율에 따른 공사대금 1,231,304,928원 중 기지급 공사대금 260,000,000원을 공제한 971,304,928원에 부가가치세 10%를 더한 1,068,435,42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,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 중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2, 4호증의 각 기재,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피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박정홍